

경상북도 고시 제2015-20호

김천시 세송 공공하수도 폐지인가 고시

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공공하수처리 시설을 폐지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15년 1월 8일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사업목적

대향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세송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을 폐지하고 기존관로를 대향처리분구 하수관로로 연결하여 김천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여 처리수 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화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함,

2. 폐지인가 내용

가. 사업시행자 및 주소

- 사업시행자 : 김천시장

- 주 소 :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(신음동 1284번지)

나. 폐지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및 면적 등

시설명	위 치	부지면적 (m ²)	시설용량 (m ³ /일)	처리공법	가 동 개시일	연계처리 하수처리시설
세 송 소규모	김천시 대항면 덕전리 1024	225	45	SMMIAR 공법	'05.03.05	김천

다. 폐지사유 : 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(하수관로 연결)

라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: 해당없음

마. 기타 관계서류는 김천시 상하수도과(054-420-6372)에 비치하고 있으니, 이
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